

의안번호	제3023호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5. 11. 7.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정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3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의자 :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의원(8인)

1. 제안이유

○ 고성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 수요가 반영된 군의회 조례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의 대상을 고성군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하여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 작성하도록 명시함
(안 제5조제1항)

다.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51호

- 예고기간: 2025. 11. 7.(금) ~ 11. 13.(목)[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 위원회가 제출 또는 발의 · 제안하는 의안의”로,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원조달 방안”을 “재원조달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 작성한다.

제5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 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 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업무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2.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u>고성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 략)</p>	<p>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u>고성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 위원회가 제출 또는 발의 · 제안하는 의안의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u>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p>
<p>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u>재원조달 방안</u>, 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 ⑥ (생 략)</p> <p><u>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u></p>	<p>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재원조달방안-----.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 작성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

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다만,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업무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2.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